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‘광역버스운송사업’에 ‘광역 수요응답형 운송사업’이 추가되는 등의 「광역교통법」이 일부개정(‘25.12.2)됨에 따라 현행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규정상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권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거나 타당성 평가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, 면허 발급권자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부 칙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1의2호 중 “나목 및 차목”을 “차목”으로 한다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.	제37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	나. (현행과 같음)
다~버. (생략)	다~버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(<u>나</u> 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)의 권한	1의2.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(<u>차</u> 목은 제외한다)의 권한